의 안 번 호	제14호
의결 연월일	2020. 3. 23.

-논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-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0년 3월 13일 서원 의원 외 6명

나. 회 부 일 자: 2020년 3월 13일

다. 상 정 일 자: 2020년 3월 23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 설명자 : 서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험과 재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 하고, 그 예방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 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O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O 시장 및 의료인 등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시민의 권리와 의무(안 제5조)
-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대책반 구성(안 제6조~제7조)
- O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역학조사(안 제8조~제9조)

- 예방접종 실시 및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·설치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~제12조)
- O 감염병환자 입소 거부 금지, 관리, 강제처분, 입원 통지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~제16조)
- O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, 방역 및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(안 제17조~제19조)
- 병문안 자제 권고 및 소독 의무,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20조~제22조)
- 감염병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(안 제23조~제25조)
- O 시행규칙(안 제26조)
-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 략
- 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 략
- 5. 토론 요지 : 생 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